##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08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최보윤·서미화·김선교

서천호・윤종오・최수진

이수진 · 남인순 · 민형배

김종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장애인의 시청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2. 위성방송사업자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 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 4.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 보방송 프로그램
- 2.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

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		
	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		
	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u>한다.</u>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		
	<u>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적인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5條(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第35條(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委員	2		
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장애인이 1</u>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 <삭 제> 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 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 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 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 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 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① (생 략) <신 설>

<삭 제>

①·①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장애인의 시청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 록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

야 한다.

- 1. 지상파방송사업자
- 2. 위성방송사업자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 4.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 2.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2

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 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 램
-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 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 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현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